2019년도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 선발

□ 선발기준

❍ 상근예비역 소요지역에 가족과 같이 거주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 중 선발당시의 학력과 신체등위, 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전산 선발

□ 선발대상

❍ 입영하는 전해 10월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소요 제기지역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아래 해당자

- 정상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19세 학적변동자 포함)
- 졸업예정자 및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을 초과한 사람
-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입영연기 중에 있는 사람이 입영하는 전해 11월 30일까지 규칙 제85조에 의한 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 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및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 다만, 병역법,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자는 제외한다.

❍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중 자녀(입양자 제외)를 양육하는 사람(미혼부나 이혼부의 경우 출산에 의한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이 있는 사람에 한함)으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 다만,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와 국내의 의과·치의과·한의과·수의과 대학(원)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은 제외

❍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부양비 기준에는 해당되나, 재산 또는 수입이 초과되는 사람으로 숙식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으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

□ 선발순위

학력 / 신체등위	중졸 이하	고퇴	고졸	대학 (6년제 포함)	대학원
우선선발	·자녀(입양자 제외)를 양육하는 사람 · 수형 사유자 · 숙식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				
3급	①	②	③	⑩	⑬
2급	④	⑤	⑥	⑪	⑭
1급	⑦	⑧	⑨	⑫	⑮